이율보증형보험 상품설명서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mark>상품의 약관</mark>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 상품내용

상품명	무배당 현대 이율보증형 II 보험
상품제공기관	현대해상화재보험
상품특징	퇴직연금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이율보증형 상품으로, 가입자가 보증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 시점의 적용이율을 보증기간 종료시까지 확정 적용
이율보증기간	1년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적용이율] - 신규가입일 현대해상화재보험 홈페이지(www.hi.co.kr)에 고시된 이자율 적용 (홈페이지 → 공시실 → 상품공시 → 퇴직연금공시/원리금보장형 → 원리금보장상품 현황) - 과거 적용이율 현황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확인 가능 (홈페이지 → 공시자료실 → 상품비교공시 → 퇴직연금 → 퇴직연금비교공시 → 원리금보장퇴직연금상품)
	[적용이율 산출기준]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하여 결정 * 기준이율(%) : 국고채 수익률의 평균값과 회사채 수익률의 평균값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중도해지이율]

단위보험이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 아래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 지급

보유기간(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 ~ 이율보증기간의 1/2미만	적용이율 X 50% X 경과월수 / 보증기간 (단, 최저금리 1.0)
이율보증기간의 1/2이후	적용이율 X 경과월수 / 보증기간 (단, 최저금리 1.0)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 1) 경과월수 : 해지시점의 경과기간으로 월미만 절하
- 2) 보증기간 :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으로 월미만 절상
- 3)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X.XX%)

[특별중도해지 사유]

아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 미적용

- ①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및 분할,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 ②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 ③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④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 ⑤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 ⑥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 ⑦ 가입자가 법상 중도인출 사유로 인하여 중도인출 하는 경우

현대해상화재보험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 상품설명서

해지 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만기 후 운영방법	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상환 단, 확정급여형(DB제도)의 경우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의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

02 기타 안내사항(금융소비자 권리보호 안내 관련)

V		
예금자보호	[DB 제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DC 및 IRP 제도]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상담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한 경우 1588-5656 또는 www.hi.co.kr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전화1332, www.fss.or.kr) 또는 한국소비자원 (전화 1372, www.kca.go.kr)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